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43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정혜경 · 윤종오 · 전종덕
손 솔 · 최혁진 · 민병덕
이성윤 · 한창민 · 이주희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

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함(안 제7조제3항).

나. 고용안정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
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13조의2 신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고용정책 기본법」”을 “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③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미리</u> 공청회 등을 통해 <u>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u> <u>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u> <u>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에는 이를 반영하여 「고용정</u> <u>책 기본법」</u> ----- ----- ----- -----.
④ (생 략) <u><신 설></u>	④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u> <u>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장</u> <u>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체제</u> <u>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u> <u>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u> <u>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u> <u>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u> <u>다.</u>